중국 GMO 법률 운영체계 및 관리정책의 문제에 관한 연구

유 예 리*

- I. 문제의 제기
- Ⅱ. WTO의 GMO 규정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Ⅲ. 중국의 GMO 입법현황 및 관리정책
- IV. 중국 GMO 관리 제도의 문제
- V. 한국에의 시사점

I. 문제의 제기

본고는 세계 곡물가가 급상승하면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1)

^{*} 중국 칭화대학교 법학원 법학박사

¹⁾ GMO는 유전자조작(변형)식품, 유전자조작농산물, 유전자조작제품, 유전자조작작물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GMO농산물, GMO식품, GMO제품 등 그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GMO는 그 자체에 식품, 농산물, 제품, 작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GMO식품이 아닌 GM식품, GM농산물 등의 표현이 옳다고 봄으로, 본고에서는 GMO 혹은 GM농산물, GM식품, GM제품, GM콩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가 곡물수요의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대량 수입하고 있는 중국 농산물과 식품에 대하여²⁾ 중국 정부는 국내적으로 어떻게 GMO 관리를 강화 보완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중국산 GM 농산물과 식품의 국내 유통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내에서의 GMO 관리와 법률³⁾ 운용 체계에 대한 국내적 연구가 미흡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GM수입식품 표시제의 GMO포함가능성 있음'이라는 애매한 규정 때문에 수입식품의 GMO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GMO 정책 또는 GMO 감시 감독 체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4) 중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GM 식품은 한국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중국의 GMO 입법체계와 관리정책 및 그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GM감자나 옥수수 같은 농산물 자체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GM 식품이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고 소량 사용될 경우 혹은 고도로 정제, 가공되어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유전자조작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된다. 게다가 표시대상품목도 한정되어 GM콩과 옥수수, 콩나물, 감자와 이들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에 한해서만 표시하도록 되어있어, 예컨대 GM

²⁾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0.2%로 350톤을 옥수수는 자급률이 0.8%로 900만 톤을 콩 자급률은 13.6%로 100만 톤을 연간 수입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옥수수의 수입은 2005년 기준 중국으로부터 4258천 톤(식용)과 1511천 톤(사료용)으로 가장 많고 미국으로부터 80천 톤(식용)과 2050천 톤(사료용)을 수입하고 있다. 출처: 관세청EDI,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1980}년대 이후 중국 법학계에서는 법'과 법률'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 법'은 국가권력과 직접적 필연관계는 없으며 국가 권력을 법'의 실제기초로 볼 수 없는 것인데 비하여 법률'은 국가권력과 서로 직접적 필연관계가 있으며 보편성과 규범성 국가강제성의 특징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법'을 사회생활중의 자연 질서, 관습법, 자연법, 국가제정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규범으로, 법률'은 국가가 제정한 법을 의미한다. 셋째, 법'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부문규장과 지방규장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규범성 문건을, 법률'은 전국인민대표 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본고의 제목에서 쓰인법률'은 첫째와 둘째에서 내린 법률'의 개념으로 쓰였다. 강효백, 「중국법통론」, 2006, p. 15.

⁴⁾ 강기갑 현애자, 「GMO관련 법률 제도 및 국내 유통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연구소, 2006년 국정감사, p. 50.

옥수수가 수입되면 가공을 통해 전분, 전분당으로 변해 GMO 표시 없이 사용 된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GMO 관련 WTO규칙 및 안정성의정서의 GMO 무역 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 다음으로 중국 GMO 관련 규제법규를 살펴보고, GMO 기술개발과 생산에서 비교적으로 우 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이 GMO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우리나라와 미 국의 GMO 관리정책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Ⅲ). 끝으로 중국산 GM 농 산물 수입에 대비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제안하면서 본고를 맺고자 하다(IV).

Ⅱ. WTO의 GMO 규정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1. GATT/WTO의 GMO 규정

GMO는 우선 상품무역, 특히 GMO의 수출입과 관련 있는 GATT 1994의5 제 3조 내국민대우 조항과 제 1조 최혜국대우 조항, 제 11조 수량제한금지 조 항이 GMO의 관리 및 무역과 관련해서 적용된다. 또한 GATT 1994 제 20조 일반예외조항도 GMO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규정이다. 제 20조 (b) 인 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경우에는 제 3 조와 제 11조 의무에 대한 면제를 허락함으로써 무역제한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WTO협정 가운데 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SPS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s of Sanitary and Phytosanitory Measures, SPS)과 TRIPs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⁵⁾ GATT는 규칙과 다자간 협정들의 집합으로서 법률적인 성격만 있었고 국제기구적인 성격은 없었다. 종래 GATT는 상품교역에만 적용되어 온 반면에 WTO는 상품교역뿐 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지적소유권 분야에 이르기까지 적용범위를 넓혔다. 1947년에 만들어진 GATT(1947)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수정되고 보다 명료화되었는 데 이렇게 수정된 GATT(GATT1994)는 WTO의 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GATT는 WTO체제하에서도 여전히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은 GMO와 관련이 깊다.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이행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상표6), 의장7, 특허8), 미공개정보의 보호9 규정이 GMO에 적용될 수 있다. 그중에서 제 27조 2항은 통식물과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제 27조 3 (b)항은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非)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공정(processes)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공정은 특허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국내특허체제에서 동식물과 생물학적 공정을 특허에서 배제할수 있으나, 미생물이나 비(非)생물학적이고 미생물학적 공정은 특허로 보호해야한다. 현재 생명공학과 TRIPs 위원회의 논의는 초보단계이나 중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 및 토착지식에 대한 보호와 이러한 지식의 상업화로 얻는 이익의 분배에 대한 것이다.10)

GMO의 안정성이나 표시제도와 관련 있는 협정은 TBT협정과 SPS협정으로 이들의 적용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TBT협정은, 상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규격 및 그 인증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왜곡을 야기하지 않도록 규율하기 위해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되고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강화된 규율이다. SPS협정은,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GATT 제20조 (b)에 따라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UR협정 결과 제정한 것이다. GMO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조치가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SPS협정의 범위에 들어가고 그 외의 것은 TBT협정의 대상으로 된다. 즉, (1) 식품속의 GMO가 오염물질이라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GM 식품의 수입과 유통을 제한하는 조치, (2) GMO가 유해동식물이라면 그 위험으로부터 역내의 동식물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과 유통을 제한하는 조치,

⁶⁾ TRIPS 제15조-21조.

⁷⁾ TRIPS 제25조-26조.

⁸⁾ TRIPS 제27조-34조.

⁹⁾ TRIPS 제39조.

¹⁰⁾ 김만길, WTO의 LMOs 규정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의 관계", 「국제상학」 제22 권 제1호, 국제상학회, 2007, pp. 266-267.

(3) 사람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GM식품의 표시 제도를 채택한다면, SPS협정의 대상이 되지만 안정성과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정보 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TBT협정의 대상이 된다.11)

2.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바이오안전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Biosafety, 이하에서는 의정서)는 GMO의 국경 간 이동이 인체의 건강을 포함 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 기 위해 GMO의 국경 간 이동을 규제하는 조치를 다루는 협약이다. 생물다양 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¹²⁾의 부속의정서로서 본질적으로 다자간환경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인체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WTO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에 직접 개입하는 조치를 다루고 있다. 의정서는 GMO를 사용 목적에 따라 환경방출용, 식용 사료용 가공용, 밀폐사 용용 GMO로 구분하고 있어 GMO의 종류에 따라 사전통보합의 절차와 위해 성 평가 등의 요건이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정서의 중요한 규정은 사전통보합의, 사전통보절차와 동 의정서에 부합되는 각 국내 법령, 사전예방 원칙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13)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이자 의정서의 회원국이지만 GMO 무역관계에서 의정서가 WTO협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의정서는 1995년 발효된 WTO협 정보다 발효 시기가 늦고. 규율대상도 특정의 물질 및 동 식물'이기 때문에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원칙에 따라 의정서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

¹¹⁾ 농민과 사회, 2006 겨울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p. 45.

¹²⁾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유전자원 이용 시 발생되는 이익 의 공정한 배분, 자국 관할하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관리권한 향유 및 바이오안 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질서 확립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의해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을 계기로 1993년 12월 발효되었다.

¹³⁾ 장호민□김배성□성봉석, 유전자변형제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무역규제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제27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2, pp. 330-333.

다.1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은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마련된 법률로 의정서의 취지를 담아 생물체로서의 GMO의 수입·생산 승인을 포함해 개발 수출 유통 등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1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가 특정 대상품목에 그치지 않고 생물체로서 GMO의 전 범위를 다루고 있다. 본 법률은 식용 카공용·사료용의 모든 생물체로서의 GMO는 수입신청서에 보통명, 학명, 계통명을비롯해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이는 현재 콩, 옥수수, 감자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국내 GMO 표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핵심 근거라 할 수 있다.16)

중국 역시 의정서의 회원국으로서 2002년 3월 중국 농업부는 「농업유전자 조작생물안전평가관리방법(农业转基因生物安全评价管理办法)」을 공포 시행하여 GMO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상품목에 대해 GMO 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정서에 근거한 생물안전법(生物安全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Ⅲ. 중국의 GMO 입법현황 및 관리정책

1. 중국의 GMO 입법현황

중국은 1993년 위생부(卫生部), 농업부(农业部)와 경공업부(轻工业部)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생물유전공정안전위원회(国家生物基因工程安全委员会)를설립하여 의약, 농업과 경공업의 생물안전에 책임을 졌다. 1994년 이후에는 농업생물기술, 특히 GMO 작물과 GMO 사육동물의 발전으로 인하여 농업부가 생물기술안전관리의 주요부문이 되었다. 현재 중국에서 생물 안전에 책임을 지는 부서는 국가환경보호총국(国家环境保护总局), 과기부, 농업부, 위생부, 국가의약관리(国家医药管理),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과 교육부(教育部) 등이

¹⁴⁾ 김만길(2007), pp. 269~270.

¹⁵⁾ EU는 2001년, 2003년 바이오안전의정서에 근거하여 GMO 규제제도를 강화하였다.

¹⁶⁾ 강기갑 현애자(2006), pp. 8-11.

다. 중국 현행 GMO 생물(식품) 안전관리법규체계로는 국무원이 제정□공포 한 행정법규와 국가과학위원회(国家科委), 농업부, 위생부가 각각 제정□공포 한 부문규장이 있다.

<표1> 중국 GMO 규제법규17)

관련법규	제정 기관	시행 일시	제정목적
유전자연구안전관리실시규정 (基저工程安全管理规定)	국가과 학기술 위원회	1993. 1224	중국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유전자연구의 실험 연구, 중간실험, 공업화생산, 유전공정상품사용 등에 적용
농업생물유전자연구안전관리실시방법 (农业生物基因工程安全管理实施办法)	농업부	1996. 7.10	유전자조작과 유전공정의 안전등급 및 안정성 등급 확정. 농업생물유전공정안전관리의 규범 화, 농업생물기술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 농업 생대환경과 인류건강 보호하는데 중대한 보장 작용
농업유전자조작생물안전관리조례 (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국무원	2001. 5.23	농업생산 혹은 농산품 가공의 동식물, 미생물과 그 상품의 안전문제 규제
농업유전자조작생물표식관리방법 (农业转基环际识管理办法)	농업부	2002 320	농업유전자조작생물 표식관리 강화와 판매 행위 규제
농업유전자조작생물안전평가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安全评价管理办法)	농업부	2002 320	농업유전자조작생물의 인류□동식물□미생물 과 생태환경구성의 위험 혹은 잠재한 위험에 대해서 평가
	농업부	2002 320	농업유전자조작생물 수입안전관리 강화와 국 제유전자조작생물의 중국 내에서 유통 통제
유전자조작식품위생관리방법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위생부	2002. 7.1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감독과 관리강화 및 소비자 건강 보호와 알 권리 보장
유전지조작상품수출입검역검시관리방법 (进出境转基因产品检验检疫管理办法)	국가질 검총국	2004. 612	수출입유전자조작상품검역 관리 강화 및 인체 건강과 동식물 미생물 안전을 보장하며 생태 환경 보호
중화인민공화국농산품질량안전법 (中华人民共和 国 农产品质量安全法)	전인대 상임위 원회	2006. 11.1	소비자의 농산품질량안전상황 식별의 편리와 점차적으로 농산품질량안전소급제도 건립

^{17) 〈}표1〉은 중국 GMO 규제법규를 제정 공포된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刘杨 , "转基因产 品的法律规则",大连海事大学法学硕士学位论文,2006年9月,pp。34-38과 서운석, 중 국의 생명공학(BT) 발전 현황 분석-GMO(유전자변형농산물)을 중심으로", 「중국연 구」제38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6, pp. 191-193 을 참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993년 12월 24일 중국 최초의 GMO 생물 안전성 관리규범인 「유전자연구안전관리실시규정」을 공포하였다. 본 규정은 중국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유전자연구의 실험연구, 중간실험, 공업화생산과 유전자안전연구와 유전자공연구상품사용에 적용되며, 동시에 안전조작, 폐기물조치, 응급조치 등을 포함한 안전규제조치에 관하여 원칙성 규정을 마련하였다. 비록 본 규정이 공포 시행된 시기는 오래되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여 실제적으로 적용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농업부는 1996년 7월 10일 유전자기술의 응용과 관리를 규범하는 「농업생 물유전자연구안전관리실시방법」을 반포하였다. 본 규정은 1993년 시행된 「유전자연구안전관리실시규정」과 비교하여 실효성이 강조되었다. 본 규정 은 또한 생물유전자, 조작과 유전공정 등 세 방면에 안전등급과 안정성등급을 확정하였다. 신고 및 비준 방면은 실험연구, 중간실험과 상품화생산의 비준권 한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었고, 동식물 식물 미생물 수생생물유전공정 체 비준은 분별하여 유전자공정안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상세한 신청표를 첨부하였고 신고비준순서상 매년 두 번 유전자공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비 준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하지 않은 유전공정체와 그 상품의 안전 성평가는 부록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있고 최후 일부는 안전규제조치까지 고 려하였다. 또한 외국의 농업생물유전공정체 및 그 상품이 중국내에서 중간실 험, 환경해방 혹은 상품화 생산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허가한 동종의 증서를 소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생물유전자연구안전관 리실시방법」의 시행은 중국의 농업생물유전공정안전관리가 전무하던 상황에 서 점차적으로 규범화의 궤도로 진입하도록 하였으며, 농업생물기술의 건강발 전을 촉진시켰으며 농업생태환경과 인류건강을 보호하였고 중대한 보장 작용 을 하였다.

국무원이 2001년 5월 23일 반포 시행한 「농업유전자조작생물안전관리조례」는 농업유전자조작생물연구와 시험, 생산과 가공, 경영, 수출입, 감독검사, 법률책임 등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조례는 중국 인민의 건강과동식물, 미생물안전,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농업유전자조작생물기술연구를 촉진하며 농업 GMO 상품 국제무역방면에 유리한 법률보장을 제공하고자 제정되었다. 대상품목은 5개 품목 17종(1차 지정목록)으로 콩, 옥수수, 유채, 면화종자, 토마토(해당품목 종자포함)와 콩, 옥수수, 유채, 토마토 가공식품 등이

며, 표시기준은 GMO의 경우 유전자변형00'라고 표기하고 GMO 가공품의 경 우에는 유전자변형00가공품', 가공원료는 유전자변형00일'이라고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18) 다만 GMO 또는 GMO 성분을 함유한 가공품이지만 최종상품에 는 검출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에는 본 제품은 유전자변형00으로 가공되었으 나 본 상품에는 이미 유전자 변형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음'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으로 관리규정 위반 시 시한을 정하여 시 정하고, 불법 판매한 제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벌금형(1-5만 위안)에 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 하지만 본 조례는 단지 농업 GMO 생물만 규범하 여 그 범위가 협소하여 GMO 간접가공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불리하 다.20)

농업부는 국무원의 「농업유전자조작생물안전관리조례」의 실시를 관철하기 위하여「농업유전자조작생물표식관리방법」,「농업유전자조작생물안전평가관 리방법」,「농업유전자조작생물수입안전관리방법」,「농업유전자조작생물안 전평가관리순서(农业转基因生物安全评价管理程序)」,「농업유전자조작생물수 입안전관리순서(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程序)」,「농업유전자조작생물표 식심사인가순서(农业转基因标识管理审查认可程序)」를 동시에 반포하였다. 농 업부는 다섯 차례의 상무회의를 거쳐 「농업유전자조작생물표식관리방법」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본 규정은 농업 GMO생물의 표식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유전자조작생물의 판매행위를 규범하기 위해서이다.

농업부가 2002년 3월 20일 시행한 「농업유전자조작생물안전평가관리방법」 이 평가하는 것은 농업유전자조작생물이 인류□동식물□미생물과 생태환경구 성의 위험 혹은 잠재한 위험에 대해서이다. 안전평가작업은 식물 동물 미생물 3개 유형에 따라 과학에 근거하여 각 사안별 심사를 원칙으로 급과 단계로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다.

농업부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 「농업유전자조작생물수입안전관리방 법」은 농업 유전자조작생물 수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 유전자조작생

^{18) 「}조례」 제 4장 제 28조.

¹⁹⁾ 서운석(2006), pp. 191-192.

²⁰⁾ 王小京, "试析WTO框架下与转基因产品相关的贸易规则——兼论中国转基因产品立法之 完善", 国际经贸探索 第22卷 第2期, 2006年 3月, p. 41.

물(식품)의 중국 내에서 유통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중국 위생부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유전자조작식품위생관리방법」은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관리대상식품은 유전자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의 구성을 재조합한 동물, 식물, 미생물을 사용하여 생산된식품과 식품첨가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생부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위생부는 허가한 GMO식품을 식품생산 및 판매에 사용할 수 있는 GMO식품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GMO식품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과 영양 및 품질 평가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기준을 고시하였다. 위생부에 GMO식품전문가위원회를 두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식용안전성과 영양 및 품질에 대한 평가를 담당케 하고 요건을 구비한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과 영양 및 품질 평가에 대한 검증을 담당하도록 하는 검사업무도 하였다. GMO 물질이 함유된 경우유전자재조합00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00식품을 원료로 함"을 표시하여야 하며 허위 과대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 국가검역총국은 WTO 회원국의 의견과 건의에 기초하여 2004년 6월 12일 「유전자조작상품수출입검역검사관리방법」을 반포하였다. 본 규정의 실시 목적은 수출입 유전자조작상품의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인체건강과 동식물, 미생물 안전을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본 관리 규정은 명확히 수출입유전자조작동식물과 그 상품, 미생물과 그 상품과 식품의 신보제도 및 GMO표식관리제도와 허가제도를 확립하였다. 동시에 GMO 검측진행의 필요 혹은 비 GMO증명의 수출상품의 필요에 대하여 명확한 검측순서와 증명순서를 규정하였다.

제 10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위회 제 2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 국농산품질량안전법」이 표결 통과되어 2006년 1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소비자가 농산품질량안전상황 식별의 편리와 점차적으로 농산품질량안전소급제도를 건립하기 위하여 본법은 농산품의 포장과 표식제도를 제 5장 농산품포장과 표식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중국의 GMO 관리정책

현재 국제기구와²¹⁾ 세계 각국은 GMO 문제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다. EU는 GMO의 안전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GMO가 과학 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므로 GMO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²²⁾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MO 수출입과 관 련해서도 EU는 지식이나 정보부족으로 인해 GMO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는 경우 수입국은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GMO가 기존의 제품과 동일하 며 과학적 위해성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며 GMO식품을 일반식품 과 차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 및 유통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수출을 어 렵게 하고 GMO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비관세장벽, 기술적 무역장벽이라 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소비자 및 환경보호단체 등에서 잠재적 위 해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FDA), 농무부(USDA), 환경보호 청(EPA) 등의 광범위한 과학적 평가 결과 GMO가 일반 농산물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라벨링, 사전승인, 안전성 검사 등과 같은 별도의 규제는 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 장에서는 중국이 GMO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의 GMO 관리정책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GMO의 안전성에 대해 성분. 형태. 생태학적 특징에서 전통적인 제 품과 동등하다면 GMO도 기존 식품과 동등하다는 실질적 동등성 원칙 (Principle of Substantial Equivalence)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GM 작 물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는 다른 사전예방원칙에 입 각한 GM작물과 식품에 의무표시제(강제표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

²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는 GMO의 안전성 평가기준으로 실 질적 동등성' 개념을 도입하였고,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설치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휴기식품지침'을 제정하면서 GMO 에 대해서는 유기농산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기준을 채택하였다. NGO들은 GMO가 암을 유발시키거나 식물의 잠재적 독성물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²²⁾ 사전예방원칙은 어떤 활동이 환경 혹은 인간 건강에 심각한 손상의 위협을 가할 경 우 비록 일부 원인-효과의 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을지라도 사전 예방적 조치들을 휘해야 마땅하다는 원칙이다.

자변형이 아닌 생산품에 혼입되는 GM생산품의 비율인 혼입치 비율이 우리나라는 3%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미국은 그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중국의 GMO 안전규제정도는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23)

2005년 말까지 세계 각국은 17개의 GM작물을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상업화 허가를 하고 있는데, 승인된 작물 수는 각 국가별로 다르며 승인된 종류도 상이하다. 중국은 GM 작물 상업화 허가 작물이 총 4개로 15개 작물을 승인한미국보다는 적지만 2개 품목만을 승인한우리나라보다 상업화를 장려했다고가정할수 있다.²⁴⁾ GMO 상업화 승인의의미는 GMO의 생산(재배), 식품, 사료, 상업판매 등에 대한 허가를 의미한다. 중국의 GM작물 생산면적은 330ha로미국(4,980), 아르헨티나(1,710), 브라질(940), 캐나다(580) 다음으로 GMO재배면적이 넓은 지배적인 GMO 생산 국가이다.²⁵⁾

GMO 관련 규제 가운데 중국 국무원이 공포 시행한 「농업유전자조작생물 안전관리조례」만이 행정법규이고 나머지 GMO 관련 규범성 문건은 모두 부문규장이다. 행정법규(行政法规)는 중국의 국가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공포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이다.26) 행정법규의 효력은 헌법과 법률 다음이며 규정(规定), 결정(决定), 조례(条例), 판법(办法), 잠행조례(暂行条例), 통지(通知), 해석(解释) 등 그 명칭은 다양하다. 부문규장(部门规定)은 국무원 소속의 각 부, 각 위원회가 헌법과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규범성 문건(헌법 제 90조)을 가리킨다. 부문규장은 헌법과 법률 및 행정법규와 저촉해서는 안 되며 부문규장의 명칭은 실시세칙(实施细则), 잠정규정(暂行规定), 통지(通知), 설명(说明), 의견(意见) 등 다양하다.27)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제정된 GMO관련 법규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생명공학육성법 등이 있으며, 미국은 연방식물유해생물법과 미국 연방 살충 살균 살서제법(FIFRA)이 있다.

중국은 GMO 기술개발과 생산에서 비교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로

²³⁾ 정영평(2007), 유전자변형(GM)작물의 진흥과 규제에 관한 정책 유형의 분류와 적용", 「행정논총」, 제 45권 제25호, 2007, p. 211.

²⁴⁾ 정영평(2007), pp. 202-204.

²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²⁶⁾ 행정법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해당한다.

²⁷⁾ 중국의 부문규장은 우리나라의 행정각부의 부령에 해당한다. 강효백(2006), p. 23-24.

서28) 과잉규제를 하게 되면 중국의 GMO 기술 발전과 중국의 GM 농산물 수출에 장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미국과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다.29) 그러나 GMO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과소규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GMO 규제에 대해 과잉규제 (over-regulated)도 할 수 없고 과소규제(under-regulated)할 수도 없는 중간정책으로 관리해 왔고, 향후 그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표2> 한국, 중국, 미국 GMO 정책의 비교30)

	한 국	중 국	미 국
담당기관	농림부□보건복지부□ 과기부□식품의약품 안전청	농업부□위생부□과기부□ 국가환경보호총국□식품과 약물관리국	농무부(USDA)□환경보호청 (EPA)□식품의약품안전청 (FDA)□직업안전과 위생관 리국(OSHA)□국립위생연구 원(NIH)
관련법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31) 생명공학육성법32) 등	농업유전자조작생물안전 관리조례, 농업유전자조작 생물표식관리방법, 농업유 전자조작생물안전평가관 리방법, 농업유전자조작생 물수입안전관리방법 등	미국연방살충□살균□살서 제법(FIFRA)□연방식물유해 생물법 등
관리방식	엄격	엄격	느슨함
안전성평가	사전예방원칙	사전예방원칙	실질동등성원칙
규제유형	강제	강제	자율

²⁸⁾ 중국은 GM쌀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GM쌀 상업화 바로 직전 단계에서 시험재배가 진행되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dataRoom/dataRoom_02.jsp

^{29) 2002}년 미중 대두분쟁에서 미국이 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힘에도 불구하고 중국 농업부는 「농업유전자조작식품표시관리방법」을 공포 시행하여 중국시장에서 유전 자조작식품과 비유전자조작식품을 구분하도록 하면서 철저하게 원칙에 입각하도록 하였다.

³⁰⁾ 毛新志, 中美转基因食品政策的差异", 科技管理研究, 2007.6 참고.

³¹⁾ 현행 GMO관련 법률 중에서 우리 일상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GMO표시제 를 중심으로 국내 GMO관리의 핵심을 이루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다.

ī
Ċ
_

	한 국	중 국	미 국
표시대상	GM콩□옥수수□ 콩나물□감자와 가공식품	5개 품목 17종으로 콩 옥수 수 유채 면화종자 토마토와 콩 옥수수, 유채 토마토 가 공식품	식품용도, 영양가치 변화 등 건강과 관련 특성이 있을 시 혹은 GM 재료로 생산된 식 품의 원래 명칭이 식품의 새 로운 특성을 설명할 수 없을 때 표시
혼입치	3%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상업화	옥수수 콩(총2개)	카놀라□면화□옥수수 □콩(총4개)	알파파_카노라_치커리 면 화□옥수수□메론□파파 야□감자□쌀□콩□호박□ 사탕무□담배□토마토□밀 (총 15개)

IV. 중국 GMO 관리 제도의 문제

중국에서 법률과 정책의 관계는 정책이 법률의 제정과 집행을 지도(指导)하 는 관계이다. 정책은 법률제정의 근거이고 국가와 집정당의 기본국책과 행동 강령은 입법에서 체현되는 법률의 기본원칙이다.33) 정책이 법률과 다른 점은 정책은 당과 정부가 제정한 엄격하지 않은 관리 방식이라면 법률은 국가입법 기관이 입법 순서에 따라 제정하고 강제성이 있다. 중국의 농산물 무역 정책 은 오랜 시간 동안 법률의 작용을 대행했다. 농산품 무역정책은 1949년 건국 이래, 1978년 까지 엄격한 계획 관리 단계, 1992년 까지 계획 관리와 시장 관 리 병존 단계, WTO 가입 전 준비단계와 WTO가입 후 전면 개방단계인 현재 까지 중국에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34) 따라서 중국에서의 GMO 법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과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기준은 두 법에 의해 제시됨.

³²⁾ 생명공학 육성법은 1983년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과 사회적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 지 않던 시기에 생명공학 육성을 위해 제정되었다.

³³⁾ 중국 민법통칙 제 6조 민사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에 규 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民事活动必须遵守法律,法律沒有规 定的,应当遵守国家政策)."

³⁴⁾ 柳礼利, 国际农产品贸易多边规制与区域安排—基于韩中两国相关实践的分析",清华

률 운용 체계의 문제는 결국 GMO 관리 정책의 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중국의 GMO 관리 제도에 있어 그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GMO 관리 입법체계의 혼란과 실효성의 한계이다. GMO를 규제해야 할 법률35) 단계 규정의 부존과 현존하는 법규는 그 시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GMO의 연구와 실험, 생산과 가공, 경영, 수출입, 검사감독 과 법률책임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통일된 「생물안전법」이 아닌 중국 국무 원과 각 부처에서 공포 실시한 행정법규와 부문규장이 산만하게 규정하고 있 다. 중국 국무원이 제정한 「농업유전자조작생물안전관리조례」는 가장 효력 이 높은 GMO 식품 안전 법규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 불충분한 부분이 많다. 특히 실험실 규범과 기술표준규범에 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 고, 소비자권익의 특수보호와 구제에 관한 규정도 결여되어있다.36) 예컨대 관 리체제에 있어서도 단지 중앙부서의 관리감독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 관리 감독은 결여되어있다. 중국의 중앙부서가 전국 각 지역의 GMO 신청에 대해 상세한 심사를 할 수 없고 이는 결국 관리감독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한다. 통일된 법률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정부각개주관부문이 관리 감독 하는 과정에서 부처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37) 이는 전국적 관리감독 의 업무에 협조를 할 수 없고 종종 충돌하게 된다. 각 부처는 다른 규장을 제 정할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제정되는 경향이 있어 그 법률 효과가 매우 낮고, 결국 상호협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둘째, GMO 관리에 있어 엄격하지 못하다. 예컨대 2002년 3월 20일 농업부 가 공포 시행한 「농업유전자조작생물표식관리방법」은 GMO식품에 대해 표 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3년 7월에서야 부분적으로 GMO식품에 대 해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의 GMO 식품 관리 부처가 많다. 각개 부

大学法学院博士论文,2008年,pp. 34-35.

³⁵⁾ 중국법의 단계적 구조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지방성 법규의 순이다. 법'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부문규장과 지방규장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규범성 문건을, 법률'은 전국인민대표 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³⁶⁾ 蔡秉坤, "适应国际发展趋势完善我国转基因作物安全管理法规体系", 甘肃农业, 2005年 第11期, p。144。

³⁷⁾ 刘杨 (2006), pp. 39-40.

문의 협조가 낮고 부문 간 법률법규가 충돌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현재 GMO를 관리하는 부처는 농업부이지만 위생부, 과기부와 국가환경국이 GMO 관리에 개입하고 있고 각 부처간 GMO 관리에 대해 통일 되고 유효한 관리체계가

셋째, 중국은 행정의지가 강한 국가이므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할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GMO에 대한 중국 인민의 사회적 참여와 관심이 낮은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38) GMO 논쟁에 참여하는 주체는 크게 생명과학기업, 식품생산자와 판매자 및 GM작물재배농업인과 같은 사적부문,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를 포함한 공익집단, 정부기관, 정부산하 생명과학연구기관인 공공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39) GMO를 찬성하는 측은 정부, 기업과 연구자들인 반면, 반대 입장에 있는 주체는 농민,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다. 중국의 경우, GM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반대운동을 펴는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참여가 적을 뿐만 아니라 GM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윤리의식 또한 낮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GMO를 상업화하여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GMO 관련 연구 와 상품 판매가 가져올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는 소비자의 건강에 직결된다. 40) GMO에 대한 반대 입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요구하기 전에 중국 정부의 GMO 규제 강화정책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V. 한국에의 시사점

그 동안 GMO 관리체계가 수입 GMO의 국내 유통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국내적으로 있어 왔다. 첫째, 최종 제품으로 소비자

형성되어 있지 않다.

^{38) 2004}년 말 중국 국민에게 GMO 식품의 이해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 국민 소비자의 3/1이 GMO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하였고, 3/2가 마트에 GMO식품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鲁婷婷, 卷基因食品若干问题研究" 环境法研究网 http://jyw.znufe.edu.cn/hjfyjw/Article/2008-1/200812422847492.html (검색일:2008.1.24)

³⁹⁾ 정영평(2007), p. 196.

⁴⁰⁾ 정순미, 유전자변형식품(GMO)관련 기업 소비자 윤리에 관한 연구", 「국민논리연구」, 제63호, 2006, 한국국민논리학회, pp. 167-168.

에게 다가오는 GM식품은 GM농산물과 달리 원재료에 GMO 혼입여부를 확 인할 수 없을 때에는 GMO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기되도록 하고 있어 제도 적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GM식품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국내 사 료의 절대량이 콩 옥수수 면화 유채 등의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고 있고 원 료 농산물의 상당량이 GMO로 이뤄지나 사료관리법을 포함한 현행 어느 법 률에도 GMO 여부를 묻고 있지 않다. 셋째, 국내 GMO 표시제 대상품목이 콩□옥수수□콩나물□감자로 극히 제한되고 있어 대표적 GMO인 면화□유채 등의 수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GM면화분야에서 상당히 발전하였고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그 수 입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산물 식품 사료용에 이르기 까지 중국산 GM 면화 유채 소비에 노출되어 있다.⁴¹⁾ 본고는 GM 농산물과 식품이 중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살펴 보았고, 한국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 음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비해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GM수입식품 표시제가 GMO포함가능성 있음'이라는 애매모호 한 규정 하에서 수입식품의 GMO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수출국의 GMO 정책 또는 GMO 감시 감독 체계에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하 는 만큼, 수입식품의 GMO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경 검사에서 이를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한다.42)

둘째, 우리나라는 가공용 및 사료용으로 상당량의 GMO를 수입하고 있고, 의무적 라벨링 제도 등 EU 방식의 GMO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EU-미국 간 GMO 무역 분쟁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43) 뿐만 아니라 본 사 건은 중국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대만, 콜롬비아, 엘살바 도르, 혼드라스,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페루, 태국, 우루과이 와 함께 제3자로 참여하였기에 GMO 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의견을 알 수 있어 그 의의가 크다. 중국은 본 사건에서 SPS협정 제 5조 7항⁴⁴⁾과

⁴¹⁾ 강기갑 현애자(2006), pp. 3-4.

⁴²⁾ 강기갑 현애자(2006), p. 76.

^{43) 2003}년 5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은 EU의 새로운 GMO의 승인에 대한 잠정 중지조치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그리스 등이 취한 유통 및 수입금지조치(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European Communities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DS291).

GATT 1994 제 3조 4항45) 적용 문제에 대해 (1) GMO 제품에 대한 잠정적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후에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른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이 때 GMO 농산품의 복잡성과 불확정으로 인해 합리적인 기간"이 비교적 길어야 한다. (2) GMO 농산물과 비(非)GMO 농산물은 자연 속성, 최종용도와 소비자 태도 등 방면에서 존재하는 명시적인 차이 때문에 그들은 내국민대우 하의 동종 상품(like products)이 아니다 라고 서면과 구두로 의견을 개진하였다.46)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자 GMO수입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이상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자국의견해를 표하였다. 중국은 GMO 관련 무역 분쟁에서 SPS협정 제 10조 특별및 차등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47)를 근거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대우를 누리려할 것이다.

셋째, 우리 정부는 GMO수입국인 EU, 일본 등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며, GMO의 위험성평가 및 관리 프로그램개발, GMO 개발 및 제품승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시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 시행방법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정서의 회원국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본 규정에 따르면 그 적용범위가 특정대상품목에 그치지 않고 생물체로서 GMO의 전 범위를 다루고 있다. 이는 현

⁴⁴⁾ SPS협정 제 5조 7항: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 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른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⁴⁵⁾ GATT 1994 제 3조 4항: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그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항의 규정은 상품의 국적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운송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기초한 차등적 국내운임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⁴⁶⁾ 江保**国**,"WTO转基因农产品贸易**争**端第一案述评",法商**研**究,2007年 第5期, pp。154—155。

⁴⁷⁾ SPS협정 제 10조 1항: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준비 및 적용에 있어서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한다.

재 콩, 옥수수, 감자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국내 GMO 표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라 할 수 있으므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48)은 수입농산물에 GMO 사용 여부 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GMO 라벨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 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중국의 GMO 관리 법체계에서 지적한 바와 같 이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나 위반 시 제재조치 등이 미비하다면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수입되고 있고 향후 더욱 증가될 중국산 GM 농산 물과 식품에 대비해 국내법의 강화, 특히 GM관련 사료법의 개정과 GM관련 법률책임, 즉 행정책임,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도 보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오늘날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GMO 등과 같이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과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식품 개발이 확산되면서 FTA상 SPS조치 규정의 도입은 중요하다.49) 중국은 농축산물 수 출국으로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 농산품의 국내시장에의 접근이 확대 될 것이다. 한-칠레 FTA 제 8장 SPS조치 규정에서처럼 한-중 FTA에서도 WTO SPS협정에 기초한 규정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8) 1998}년 12월에 제정, 1999년 7월 시행.

⁴⁹⁾ 고준성,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산업연구원, 2003, pp. 111-112.

참고문헌

- 王小京, 微析WTO框架下与转基因产品相关的贸易规则——兼论中国转基因产品 立法之完善",国际经贸
- 探索 第22卷 第2期 . 2006年 3月
- 毛新志, 中美转基因食品政策的差异", 科技管理研究, 2007年6月
- 刘杨, 转基因产品的法律规则", 大连海事大学法学硕士学位论文, 2006年9月
- 柳礼利, **国**际农产品贸易多边规制**与区**域安排—基于韩中**两国**相关实**践**的分析", 清华大学法学院博士论文,2008年
- 江保国, WTO转基因农产品贸易争端第一案述评", 法商研究, 2007年 第5期
- 蔡秉坤, 适应国际发展趋势完善我国转基因作物安全管理法规体系",甘肃农业, 2005年第11期
- 鲁婷婷, 转基因食品若干问题研究"环境法研究网 http://jyw.znufe.edu.cn/hjfyjw/Article/2008-1/200812422847492.html (검색일:2008.1.24)
- European Communities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DS291)
- 강기갑□현애자, 『GMO관련 벌률 제도 및 국내 유통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연구소, 2006 국정감사
- 강효백, 「중국법통론」, 경희대학교출판국, 2006
- 고준성,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산업연구원, 2003
- 김만길, ₩TO의 LMOs 규정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의 관계", 「국제상학」 제22권 제1호, 국제상학회, 2007
- 농민과 사회, 2006 겨울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서운석, 중국의 생명공학(BT) 발전 현황 분석-GMO(유전자변형농산물)을 중심으로", 「중국연구」제38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6
- 송재일,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현황과 정책방향", 농협조사월보 504호
- 정영평, 유전자변형(GM)작물의 진흥과 규제에 관한 정책 유형의 분류와 적용", 「행정논총」, 제 45권 제 25호, 2007.6

정순미, 유전자변형식품(GMO)관련 기업 소비자 윤리에 관한 연구", 「국민 논리연구」, 제63호, 2006.12, 한국국민논리학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세계무역기구 <u>www.wto.org</u>

366

ABSTRACT

A Study on GMO Legal System and the Problems of its Management in China

Yoo, Ye Ri

The paper analyzes GMO legal system and the problems of its management in China and their suggestions to Korea. GMO has been arising as a principal alternative of grain while grain prices continue to climb. Although there has been concerns about GMO imported from China, it is true that we have not studied on China's legal system and the problems of its management in China. The paper believes that when Chinese government does not manage GMO primarily, we have a high possibility that China's GMO food will access to Korean market at any time, and threaten our health and safety. Hence, it is highly time to analyze how legally China treats GMO and what the problems of its management are.

The paper found out problems of China's GMO management in three ways. Firstly, GMO legal system of China is confused and it has limitation of effectiveness. China has no regulations like "a law" to regulate GMO and regulations which exists now are not easy to apply in substance. Secondly, China has no administrative strictness to manage GMO. For example, the regulation which ministry of agriculture in China promulgated in March of 2002 started to use partially since 2003, 7. Thirdly, China, as a nation that administration superiors to, market does not do its roll to control GMO. It relates to the low concerns and care of Chines people about GMO. The paper shows suggestions and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problems of China's GMO management.

Key words: GMO, China's GMO legal system, China's GMO management, problems of China's GMO management